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4. 4. 4 선고 2023가단12650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유신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3. 21.

판 결 선 고 2024. 4. 4.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5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23. 7. 31.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을 상대로 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차전2402 양수금 사건에서 2016. 1. 28. ‘C은 원고에게 8,066,629원 및 그 중 2,745,402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2,876,409원에 대하여는 2016.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8. 확정되었다.

나. C의 부친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2023. 6. 5.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피고, C, E, F 및 G가 망인을 상속하였는데, 2023. 7. 31. 망인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피고의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이루어져, 2023. 8. 4.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C은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및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H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의하여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상속분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상속재산분할협약에 따른 C의 1/5지분에 관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위 1/5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그동안 모친을 부양해 온 기여를 인정받아 장남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로 협의한 것일 뿐 C의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한다.

2)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선의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나아가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이 인정되려면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기초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6986 판결 등 참조).

피고와 C의 관계 등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을호증 각 기재만으로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노유경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광주광역시 동구 동[도로명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점포, 독서실, 아파트

1층 점포 386.32㎡, 2층 독서실, 아파트 379.34㎡

3층 내지 6층 아파트 각 375.56㎡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광주광역시 동구 대 80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84.45㎡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40분의 10 분.

